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나경원  
이준석 · 김예지 · 박성훈  
김기현 · 김정재 · 박정하  
임이자 · 김상훈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·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,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

2).

##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임대료 및”을 “임대료, 무상운송의 지원기준·방법 및”으로 한다.

- ④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<p>④ (생략)</p> <p>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,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-----            ---<u>임대료, 무상운송의 지원기준·방법 및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